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주 택 도 시 기 금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50배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과 같은 서민 주거 지원 관련 보증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증의 총액한도 확대(안 제23조제1항)

현재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26. ~ 9.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택도시금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도시금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보증의 한도)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u>50배</u> 로 한다.	제23조(보증의 한도) ① ----- ----- ----- <u>60배</u>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연 락 처	(044) 201 - 3347